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서범수 · 김 건
한기호 · 성일중 · 박상웅
김선교 · 강선영 · 이종배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.

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,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.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,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,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

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,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의9 신설 등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8제1항 중 “조에서”를 “조와 제34조의9에서”로 한다.

제34조의9를 제34조의10으로 하고,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9(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의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(이하 “항공자산운용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, 운영,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제34조의9제2항”을 “제34조의10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8(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(이하 이 <u>조</u> 에서 “재난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.	제34조의8(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와 제34조의9에</u> <u>서</u>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34조의9(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·운영 등)</u> <u>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의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(이하 “항공자산운용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</u>

	<u>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항공자산 운용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</u> 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④ 항공자산운용체계의 구축, 운영,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34조의9(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) (생략)	제34조의10(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) (현행 제34조의9와 같음)
제35조(재난대비훈련 실시) ① (생략)	제35조(재난대비훈련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	② ----- ----- -----제34조의10제2항----- ----- -----

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